

### (1) 세금

#### ① 소득세

---

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얻은 개인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.

##### 납부 방법

자영업자는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, 세액 등을 본인이 계산하고 매년 2월 16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합니다.

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회사가 계산해 주므로 스스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됩니다. (원천징수)

2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표를 받고 본인이 확정신고를 합니다.

##### 소득세 환급

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거나,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가족이 증가한 사람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원천징수표나 확정신고 서류는 재류 자격 갱신 수속 등을 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십시오.

확정신고는 본인이 하기 어려우므로 일찍 세무서 상담창구에서 상담하십시오.

##### ★확정신고 접수장소

이즈미사노 세무서

전화번호: 072-462-3471

##### ☆참고 사이트

국세청 '세금 정보'

<https://www.nta.go.jp/taxes/>

### ② 주민세 (시민세·부민세)

---

1월 1일 현재 주소가 이즈미사노시에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해의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단,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- 전년 중에 급여나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었던 사람
-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
- 전년 중의 소득이 시의 조례로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

#### 납부 방법

자영업자는, 이즈미사노시에서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4회에 나누어서 지불합니다.

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.

연금 수급자 중 주민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연금에서 공제됩니다. (※예외 있음)

★수속 및 문의

세무과

전화번호: 072-463-1212 (내선: 2131 ~ 2148)